

## 구속영장발부 여부에 관한 통계모형

김정훈<sup>1</sup> · 이나래<sup>2</sup> · 이계민<sup>3</sup>

<sup>1</sup>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sup>2</sup>경상대학교 정보통계학과, <sup>3</sup>경상대학교 정보통계학과

(2010년 10월 접수, 2010년 10월 채택)

### 요약

구속영장 기각시 그 기각사유로 단순히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만 기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사건의 어떤 측면이 구속영장발부에 영향을 미쳤는지 전혀 알 수 없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2006-2008년의 3개년도 영장청구자료를 범죄 유형에 따라 7가지로 분류하고 각 범죄별로 구속영장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를 알아보려고 한다. 7대 범주별 교차분석을 통하여 구속영장 기각 여부에 대한 통계모형을 다루었다.

주요용어: 구속, 구속영장, 집행유예, 누범, 교차분석.

### 1. 서론

구속이란 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는데, 구금이란 피의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에 감금하는 강제처분이고, 구인은 피의자를 법원 기타 장소에 인치하는 강제처분이다. 구속영장의 청구권자는 검사에 한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다.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심문한 후 영장청구서에 흠이 없고, 구속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4항).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요건은, 먼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밖에 구속사유로서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70조 제1항). 그러나 2001년 11월에 대법원이 판사, 검사, 변호사를 상대로 실시한 형사재판 관련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구속사유 존재여부 판단에 있어 “사안의 중대성·죄질·재범의 위험성·국민의 법 감정” 등이 깊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영장실무는 구속영장 기각시 그 기각사유를 단순히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만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기각사유의 기재만으로는 실제로 사건의 어떤 측면이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끼쳤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영장항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구속이 되지 않아야 할 사안임에도 피의자가 구속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인권침해는 없을 것이며, 반면에 마땅히 구속이 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적정한 처벌을 위한 증거수집이 어려워지고 피해자의 권익구제가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고려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이고, 그 요소가 구속여부에 기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통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우리 형사

<sup>3</sup>교신저자: (660-701) 경남 진주시 가좌동 900, 경상대학교 정보통계학과, 교수. E-mail: gyemin@gnu.ac.kr

실무에 있어 구속사유 및 구속기준을 구체화·체계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2006, 2007, 2008년의 3년에 걸쳐 구속영장이 청구된 총 1,973건의 영장청구서 및 형사사건기록으로부터 구속영장 기각여부에 관련된 중요변수라 판단되는 변수들을 조사하여 분석자료를 확보하였다. 그 다음으로 범죄의 종류에 따라 구속영장 기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유사한 성격을 띠는 범죄들을 묶어 7개의 범주로 나누었다. 그리고 나서 각 범주별로 구속영장발부여부에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차례로 찾아가는 방법을 통해 구속영장 기각여부에 관한 통계모형을 세웠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구속영장 기각여부에 대한 통계모형 개발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과정을 설명하였고, 3절에서는 유사범죄를 통합하여 7대 범주로 분류하는 과정을 언급하였고, 4절에서는 7대 범주별 구속영장 기각여부에 대한 통계모형을 다루었다. 끝으로 5절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 2. 통계모형 개발에 필요한 분석자료의 확보과정

본 연구는 창원지검 진주지청 2006, 2007, 2008년의 3개년도 구속영장청구 건을 활용하였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관내의 3개년도 구속영장청구건수는 총 1973건이었고, 구속영장 발부율은 2006년에는 87.8%, 2007년에는 81.9%, 2008년에는 78.7%였다. 2006년 699건, 2007년 663건, 2008년 611건으로 총 1973건의 자료를 활용하여 구속영장 기각여부에 대한 통계적 모형을 세웠다. 통계 분석에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별로 형사사건 기록을 이용하여 피해액, 공범의 수, 범행횟수, 합의가 되었는지 여부, 피의자의 나이, 동종전과·이종전과가 있는지 여부, 누범인지 여부, 집행유예 중이거나 결격인지 여부, 초범인지여부, 주거가 일정한지 여부, 직업의 유무, 체포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지 여부, 범행을 자백하는지 여부, 실제 재판에서의 선고형 등의 요소만을 추출하여 통계적 모형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처음 통계적 모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때에는 양형 참조요소로 꼽힌 내용들을 참고하여 범행의 계획성, 우발성, 흉기사용 유무, 범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 사회적 유대관계, 약물중독여부, 증거인멸시도 여부, 피해자 등에 대한 부적절한 접촉, 범죄수익의 은닉 등의 요소도 포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애매한 경우가 생겼고, 실제로 해당된다고 판단된 사례가 극히 드물어 이는 모두 제외하였다.

## 3. 유사 죄명을 통합하여 7가지 범주 분류과정

최초 구속영장발부 여부를 나타내는 통계적 모델을 작성할 때에는 통계자료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하나의 모델을 작성하는 방법과 일정한 죄명별로 모델을 작성하는 방법 중 어느 쪽을 택할지의 문제도 제기되었다. 1개의 모델을 작성하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범죄의 유형별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무시될 수 있고, 세밀화된 분석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예상되었다. 반면 죄명별로 모델을 작성하는 방법은 죄명별로 나타나는 특징을 발견하여 세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체적인 조망이 어렵고, 모집단의 크기가 작아지는 단점이 예상되었다. 이번 연구가 우리나라 영장 실무에서 작동하고 있는 구속영장 발부인자에 대해 유례없이 행해지는 통계분석이라는 점, 양형위원회가 최근에 만든 양형기준 역시 각 죄명별로 기준을 정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정한 죄명 범주를 나누어 구속영장 발부인자를 발견하고, 죄명별로 모형을 나타내 보기로 하였다. 죄명별로 모형의 특성에 맞도록 표 3.1과 같이 7가지 범죄로 분류하였으며, 범죄는 재산범죄, 폭력범죄, 공공침해범죄, 교통사고범죄, 도로교통범죄, 성범죄, 마약범죄로 나누었다. 이러한 죄명 분류는 우리 형법전과 형법교과서의 죄명 분류,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양형기준의 분류들을 감안하였다. 또한 진주지역의 사건 중 교통사고와 도로교통법 음주, 무면허 사건이 많이 발견되었기에 이를 별도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표 3.1. 죄명분류표

범죄 범주	범죄명
재산범죄	강도, 업무상배임, 강도살인, 업무상횡령, 강도살인미수, 장물알선, 강도미수, 장물취득, 강도상해, 재물손괴, 절도, 공갈, 절도미수, 공갈미수, 준강도, 권리행사방해, 특수강도, 컴퓨터등사용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배임, 특수강도미수, 배임수재, 특수절도, 배임중재, 특수절도미수, 사기, 특경(배임), 사기미수, 특경(사기), 상습공갈미수, 특경(수재), 상습사기, 특경(횡령),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가(강도), 상습절도, 특가(강도상해), 상습장물취득, 특가(장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가(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폭처(공동공갈), 야간방실침입절도, 폭처(공동손괴), 야간주거침입절도, 폭처(상습공갈),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횡령.
폭력범죄	감금, 중상해, 미성년자 약취유인, 특수협박, 살인, 특가(보복범죄), 살인미수, 상해, 폭처(공동감금), 폭처(공동상해), 상해치사, 폭처(공동폭행), 업무상 과실치사, 폭처(상습상해), 폭처(상습폭행), 업무방해, 폭처(상습집단홍기상해), 영아유기, 폭처(상습상해), 유기, 폭처(상습협박), 주거침입, 폭처(집단홍기등 감금), 존속살해, 폭처(집단홍기등상해), 존속살해미수, 폭처(집단홍기등손괴), 존속상해, 폭처(집단홍기등협박), 존속중상해, 폭행, 존속협박, 폭행치사, 준감금치상, 협박.
성범죄	간통, 성폭력(공중밀집추행), 강간, 성폭력(절도강간등), 강간미수, 강간치사, 강간상해, 성폭력(주거침입강간), 성폭력(친족관계강간), 강간치상, 성폭력(카메라이용), 강제추행, 강제추행상해, 성폭력(특수강도강간등), 강제추행치상, 성폭력(특수강제추행), 공연 음란, 성폭력(특수강간), 윤락행위방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준강간, 준강간미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 청소년성보호, 성폭력(13세미만 강간등), 강도강간, 청소년성보호(청소년강간), 성폭력(강간등상해), 성폭력(강간등치상), 강도강간미수.
교통사고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 특가(도주차량), 특가(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무면허), 도로교통법(음주), 도로교통법(측정거부).
마약범죄	마약류관리법(마약), 마약류관리법(향정), 유해화학물질.
공공침해범죄	건축법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 게임산업, 석유및석유대체방조, 공무집행방해, 약사법위반, 공문서변조, 공문서위조, 아동복지법위반, 공용건조물방화, 공용물건손상, 식품위생법위반, 여진전문금융업법,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유수면관리법, 공익건조물방화예비, 공 용서류무효, 위증교사, 공전자기록불실기재, 유가증권위조, 공직선거법, 유사수신, 내수면어업법위반, 위증,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의료법위반, 농지법위반, 일반건조물방화, 뇌물공여, 일반교통방해, 뇌물수수, 일반자동차방화, 도박, 일반자동차방화미수, 도박개장,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박개장방조, 자동차불법사용, 모해위증, 정보통신망(명예훼손), 무고, 정보통신망(음란물유포), 방화연소, 정보통신망(정보통신침해), 범인도피교사, 병역법위반, 정보통신망방조, 변호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위반, 보건범죄(부정의료업자), 보조금의예산및관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부동산강제집행효용 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특가(뇌물), 특가(통화위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패방지법, 폐기물관리법위반, 부정저사후수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현존건조물방화, 사행행위, 사문서위조,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사미수, 산림법위반,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현존건조물방화, 산지관리법위반,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상습도박.

#### 4. 7대 범주별 구속영장 기각여부에 대한 통계모형

##### 4.1. 성범죄 범주

진주지청의 2006, 2007, 2008년도 구속영장청구를 기반으로 7가지 범죄별로 구속영장 기각 예측모형을 만들었다. 범죄별로 교차분석을 통하여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차례로 찾아가면서 분류해 나가는 방식으로 의사결정나무를 만들었다. 범죄 모형 내에서 피해액, 공범수, 동종전과, 이종전과와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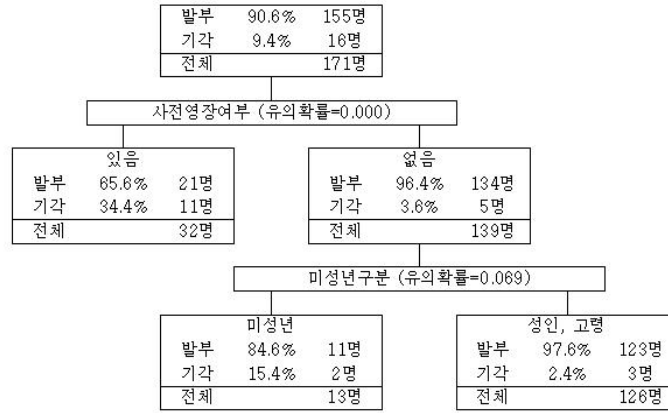


그림 4.1. 성범죄 범주의 구속영장 기각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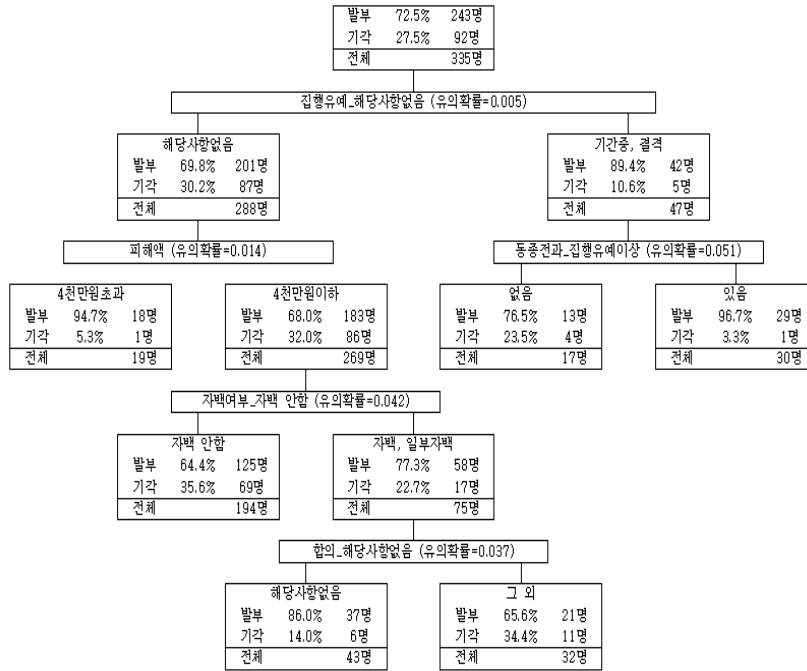


그림 4.2. 공공침해범죄 범주의 구속영장 기각모형

연속형 변수의 경우 범주화하여 분류하였다.

성범죄는 간통,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의제강제 추행, 성매매알선, 성폭력, 윤락행위방지법위반, 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 등을 포함하였다. 그림 4.1에서 알 수 있듯이 성범죄의 청구건수는 171건으로 전체 기각률이 9.4%이다. 사전영장이 있으면 기각률이 34.4%로 높아진다. 사전영장이 없으면서 성인, 고령인 경우 기각률이 2.4%로 매우 낮게 나타나며, 미성년인 경우는 기각률이 15.4%로 높게 나타나, 자료수가 충분치 않아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더 많은 자료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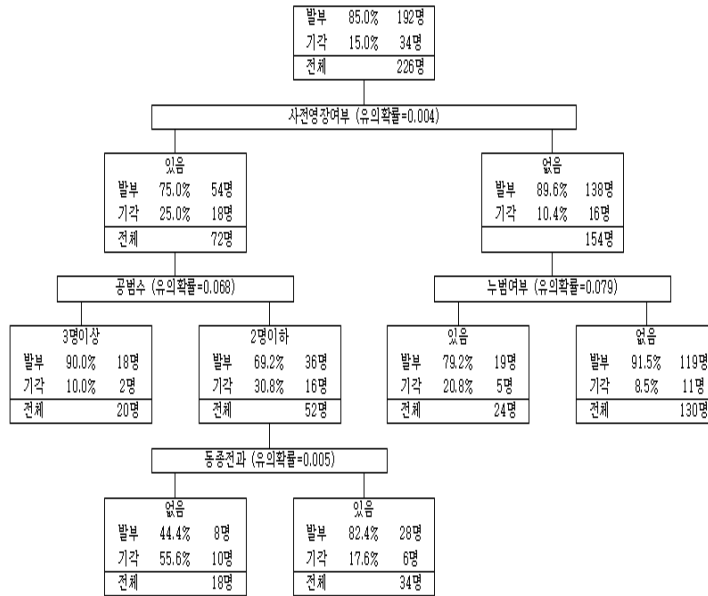


그림 4.3. 폭력범죄 범주의 구속영장 기각모형

#### 4.2. 공공침해범죄 범주

공공침해범죄는 건축법위반, 공문서위조, 공용건물손상, 공직선거법, 도박개장, 방화연소, 병역법위반,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사문서위조, 산지관리법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일반자동차방화, 정보통신망, 청소년 보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존건조물방화 등을 포함하였다. 그림 4.2에서 알 수 있듯이 공공침해범죄의 청구건수는 335건으로 전체 기각률이 27.5%이다. 집행유예가 기간중이거나 결격이면서 동종전과가 집행유예이상이 있으면 기각률이 3.3%이고, 동종전과가 집행유예이상이 없으면 기각률이 23.5%로 나타나나 자료수가 충분치 않아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더 많은 자료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에 해당사항이 없으면서 피해액이 4천만원 초과하면 기각률이 5.3%로 낮게 나타나지만 자료수가 충분치 않아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더 많은 자료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에 해당사항이 없으면서 피해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자백을 하지 않으면 기각률이 35.6%로 높아진다. 집행유예에 해당사항이 없으면서 피해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일부라도 자백하고 합의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기각률이 14.0%로 낮아지나, 합의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기각률이 34.4%로 높아진다.

#### 4.3. 폭력범죄 범주

감금, 살인, 상해,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방해, 유기, 주거침입, 존속협박, 특수협박, 폭행치사, 폭행, 협박 등을 포함하였다. 그림 4.3에서 알 수 있듯이 폭력범죄의 청구건수는 226건으로 전체 기각률이 15.0%이다. 사전영장이 있으면서 공범수가 3명이상이면 기각률이 10.0%로 나타나며, 사전영장이 있으면서 공범수가 2명이하이고 동종전과가 없으면 기각률이 55.6%로 높아지며 동종전과가 있으면 17.6%로 나타나나, 자료수가 충분치 않아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더 많은 자료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전영장이 없으면서 누범이 아니면 기각률이 8.5%로 나타나며, 사전영장이 없으면서 누범인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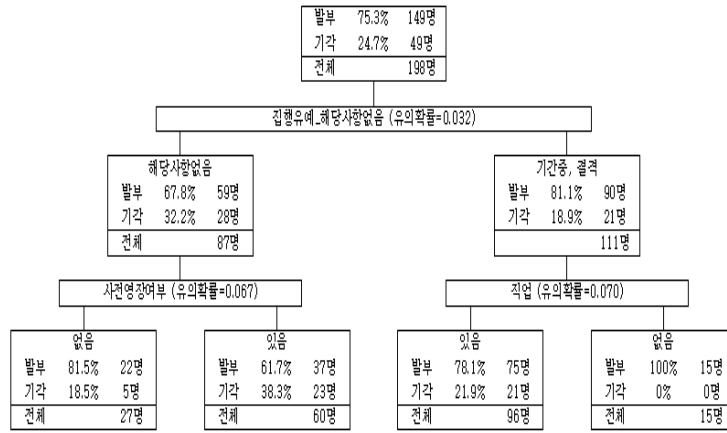


그림 4.4. 도로교통범죄 범주의 구속영장 기각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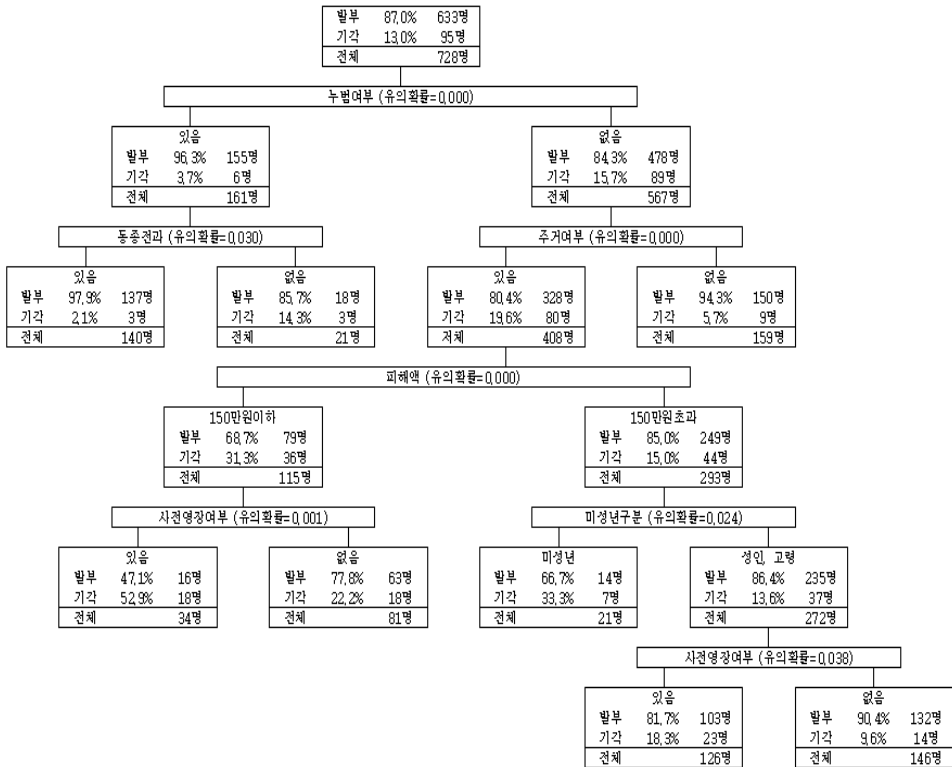


그림 4.5. 재산범죄 범주의 구속영장 기각모형

우 기각률이 20.8%로 나타나 이 또한 자료수가 충분치 않아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더 많은 자료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건영장이 없고 공범수가 2명 이하로 적으며 동종전과가 없으면 기각률이 상당히 높아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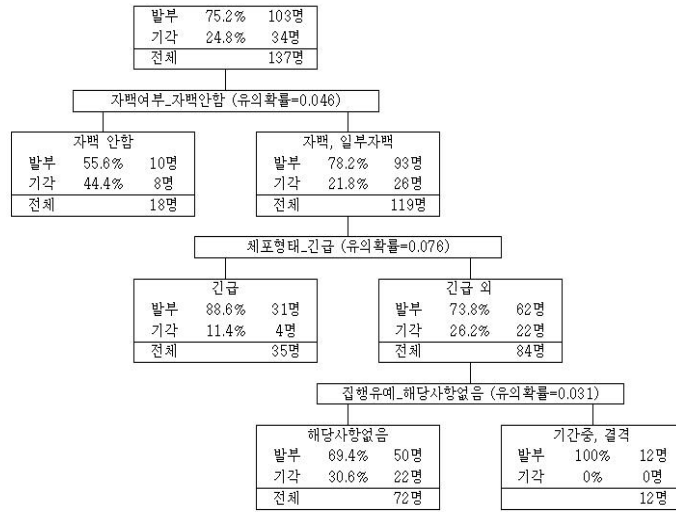


그림 4.6. 교통사고범죄 범주의 구속영장 기각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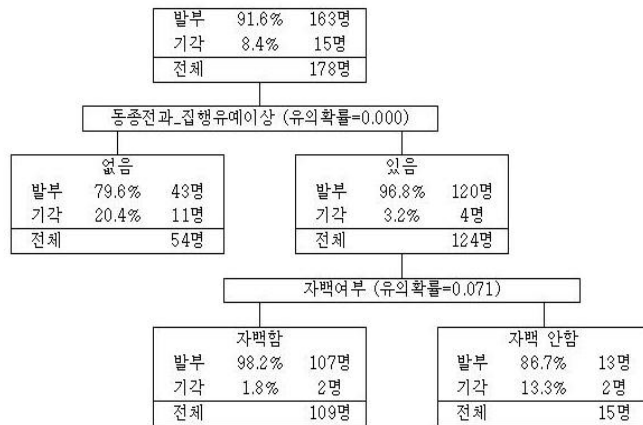


그림 4.7. 마약범죄 범주의 구속영장 기각모형

4.4. 도로교통범죄 범주

도로교통범죄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을 포함하였다. 그림 4.4에서 알 수 있듯이 도로교통범죄의 청구건수는 198건으로 전체 기각률이 24.7%이다. 집행유예가 해당사항이 없으면서 사전영장이 없으면 기각률이 18.5%, 사전영장이 있으면 기각률이 38.3%로 높아진다. 집행유예가 기간중이거나 결격이면서 직업이 있으면 기각률이 21.9%, 직업이 없으면 기각률이 0%로 낮아지나, 자료수가 충분치 않아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더 많은 자료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집행유예가 기간중이거나 결격이면서 직업이 없으면 대부분 구속영장이 발부됨을 알 수 있다.

4.5. 재산범죄 범주

재산범죄는 강도, 공갈, 배임수재, 배임증재, 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거침입절도, 장물알선, 횡령,

질도, 특수강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포함하였다. 그림 4.5에서 알 수 있듯이 재산범죄의 청구건수는 728건으로 전체 기각률이 13.0%이다. 누범이면서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는 기각률이 2.1%로 나타나며, 누범이면서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기각률이 14.3%로 나타나나, 자료수가 충분치 않아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더 많은 자료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누범이 없으면서 주거가 없는 경우 기각률이 5.7%로 낮아진다. 누범이고 주거가 일정하면서 피해액이 150만원이하이고 사전영장이 있는 경우 기각률이 52.9%로 나타나며, 사전영장이 없는 경우는 22.2%로 낮아진다. 누범이 아니면서 주거가 일정하고 피해액이 150만원초과이면서 미성년인 경우 기각률이 33.3%로 높아지나, 자료수가 충분치 않아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더 많은 자료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누범이 아니면서 주거가 일정하고 피해액이 150만원초과이면서 성인, 고령 중 사전영장이 있으면 기각률이 18.3%로 나타나며, 사전영장이 없으면 기각률이 9.6%로 낮게 나타난다. 이는 누범이 아니면서 주거가 일정하고 피해액이 적고 사전영장여부가 있는 경우 기각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 4.6. 교통사고범죄 범주

교통사고범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 도주차량, 위험운전치사상 등을 포함하였다. 그림 4.6에서 알 수 있듯이 교통사고범죄의 청구건수는 137건으로 전체 기각률이 24.8%이다. 자백을 안 한 경우 기각률이 44.4%로 높게 나타나며, 자료수가 충분치 않아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더 많은 자료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자백을 하거나 일부자백을 하고 체포형태가 긴급이면 기각률이 11.4%로 낮아진다. 자백을 하거나 일부자백을 하고 체포형태가 긴급이 아니면서 집행유예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기각률이 30.6%, 집행유예가 기간 중, 결격이면 기각률이 0%로 낮아지나, 자료수가 충분치 않아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더 많은 자료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부 자백을 한 경우 체포형태와 집행유예에 따라 기각률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 4.7. 마약범죄 범주

마약범죄는 마약류관리법(마약, 향정), 유해화학물질 등을 포함하였다. 그림 4.7에서 알 수 있듯이 마약범죄의 청구건수는 178건으로 전체 기각률이 8.4%이다. 동종전과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이 없으면 기각률이 20.4%로 높아지며, 동종전과 집행유예이상이 있으면서 자백을 했으면 기각률이 1.8%로 매우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동종전과 중 집행유예이상이 있으면서 자백을 하지 않은 경우 기각률이 13.3%로 높아지나, 자료수가 충분치 않아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더 많은 자료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5. 결론 및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의 2006, 2007, 2008년 3년에 걸친 총 1973건의 자료를 통해서 각 죄명별로 7개의 범주로 나누어 구속영장발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그 요소가 구속여부에 기여하는 정도를 통계적으로 살펴보았다. 각 범죄별로 구속영장 기각 예측모형의 결정요소를 살펴보면, 재산범죄는 누범여부, 동종전과여부, 주거여부, 피해액, 사전영장여부, 미성년여부이며, 폭력범죄는 사전영장여부, 공범수, 동종전과여부, 누범여부이다. 공공침해범죄는 집행유예가 해당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피해액, 동종전과가 집행유예이상인지의 여부, 자백여부, 합의에 해당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교통사고범죄는 자백여부, 체포형태가 긴급인지의 여부, 집행유예가 해당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이며, 성범죄는 사전영장여부, 미성년여부이다. 마약범죄는 동종전과 집행유예이상인지의 여부, 자백여부이며, 도로교통범죄는 집행유예가 해당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사전영장여부, 직업여부이다. 이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범죄별로 범죄의 특성부분이 반영되어서 구속영장 기각여부를 결정하는 요소



들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증거인멸의 염려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자백여부는 7대 범죄모형 중 공공침해범죄, 교통사고범죄, 마약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뿐이다. 동종전과 또는 동종전과가 집행유예이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공공침해범죄, 재산범죄, 폭력범죄, 마약범죄에서 의미있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사전영장여부의 경우 재산범죄, 성범죄, 폭력범죄, 도로교통범죄에서 의미있게 나타났다. 범죄별 구속영장 기각여부에 관한 통계적 모형을 보면, 우리나라 영장실무에서 빈번하게 기재하고 있는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위험’이라는 기각사유가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위험의 기각사유 이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구속영장 기각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증거인멸의 염려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자백여부는 일부 범죄에 국한되어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로 확인되었고, 전반적으로 구속영장 기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동종전과 또는 동종전과 중 집행유예이상의 여부와 사전영장여부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이 구속영장발부여부를 결정짓는데 더 중요한 고려요소임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의 3개년도 자료만을 대상으로 범죄별 구속영장 기각여부에 관한 통계적 모형을 세웠으므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발생하였다. 앞으로 구속영장청구자료를 전국의 data로 확보하여 범죄별 구속영장 기각여부에 관한 통계적 모형이 확립된다면, 불필요한 피의자의 구속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으며, 구속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을 위한 수월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지고 피해자의 권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구속영장의 기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통계적 모형을 통해서, 검사들이 구속영장 기각여부를 자체적으로 우선 판단함에 따라 불필요한 구속영장청구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강현철, 한상태, 최종후, 이성건, 김은석, 엄익현, 김미경 (2007). <고객관리를 위한 데이터마닝 방법론(Enterprise Miner 활용사례를 중심으로)>, 자유아카데미.
- 류장만 (2003). 구속영장청구기각결정이 항고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형사재판의 제문제 제4권>.
- 서의훈 (2009). <SPSS통계분석>, 자유아카데미.
- 오세인 (2001). 영장청구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형사판례연구 제 9권>.
- 유해웅 (2005). 인신구속제도의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제안, <저스티스 통권>, 83, 103-139.

# A Statistical Model for Decisions on Arrest Warrants

Jung-Hun Kim<sup>1</sup> · Na-rae Lee<sup>2</sup> · Gyemin Lee<sup>3</sup>

<sup>1</sup>Jinju Public Prosecutors' Office

<sup>2</sup>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Statistic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sup>3</sup>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Statistic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October 2010; accepted October 2010)

---

## Abstract

When most examining judges deny the request for an arrest warrant, they cite (as a reason) that there is no worry about escape or the destruction of evidence. Consequently, there has been no knowing what characteristics of a crime mainly affect the decision for an arrest warrant and there has been significant dispute about the exact decision criteria used for an arrest warrant. This paper classified the data about the request of arrest warrants for crimes committed in the jurisdiction of the Jinju Public Prosecutors' Office in 2006, 2007 and 2008, into 7 categories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crimes. For each category we construct a statistical model about the decision on arrest warrants by applying a crosstabulation analysis in order to look for the characteristic of crime that affect the decision for an arrest warrant.

**Keywords:** Arrest, arrest warrant, probation, repeat offenses, crosstabulation analysis.

---

---

<sup>3</sup>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Information and Statistic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azwa-dong 900, Jinju 660-701, Korea. E-mail: gyemin@gnu.ac.kr